



###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

1. 신고인란의 인적사항(① ~ ⑥)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 다만,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( )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⑫ 산출세액: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.
3. ⑬ 가산세액: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, 가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4. ⑭ 공제 및 감면세액: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.
5. ⑮ 납부할 세액: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.
6. ⑯ 기납부세액: 각 세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예납(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)·수시부과·원천납부세액 등을 기입하되,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.
7. ⑰ 자진납부세액: 각 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전에 계산된 자진납부할 세액(⑮ - ⑯)을 말합니다.
8. ⑱ 추가자진납부세액: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.